

大法院 判例를 통해 본

工業所有權制度의 紙上分析

- 工業所有權制度의 紛爭은 어떠한 過程을 거쳐 解決되는가? 모든 紛爭.....○
-이 그렇듯이 工業所有權制度도 大法院에서 解決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다만 地方法院 대신 審判所, 高等法院 대신 抗告審判所를 거쳐 大法院에.....○
- 上告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 그러면 어떤 紛爭들이 大法院까지 上告되어 어떻게 解決되었는가? 이에.....○
-本誌는 「判例研究」를 위하여 工業所有權 4法の 代表的인 大法院 判例를.....○
-모아 分析해 보았다.....<編輯者 註>.....○

◎ 第 18 回

<前號에서 계속>


地理的 名稱

區分 事件番號	判決(審決)日 (結果)	名 稱	適用法條文
			(類型別)
79후 80	80. 5. 27 (棄 却)	(第34類) 보통안경, 코 안경, 수중안 경, 안경알안 경테, 안경집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2號 地理的 名稱 및 國家名
78抗告(절) 173 (78-6236)	79. 8. 31 (不成立)		

名稱을 보통의 方法으로 表示한것에 不適當한것이고(顯著한 地理的 名稱이 要素로 되어 있는 것은 勿論 여기에 識別力이 없는 부기의인 圖形을 부기한데 不適當것도 마찬가지다)또 國家名을 營利의 目的으로 하는 商品의 商標로서 使用한다는 것은 國際信義에 反한다고 하여 本願商標는 登錄될 수 없는 것이라고 判斷하였다. 살피건대 記錄을 檢討하여보면 原審의 事實認定이 首肯되고 또 原審의 判斷도 正當하여 原審決에 所論 商標法에 關한 法理誤解나 審理未盡, 判斷遺脫, 理由 不備等의 違法이 있음을 認定할 수 없음은 勿論 所論 對比判斷의 基準을 그릇친 違法도 없다.

簡單한 標章

區分 事件番號	判決(審決)日 (結果)	名 稱	適用法條文
			(類型別)
79후 33	79. 12. 11 (棄 却)		商標法 第8條 第1項 第6號 (簡單한 標章)
77抗告(절) 418 (76-1554)	79. 3. 31 (不成立)	(37類) 動力起重機, 掘鑿機	

本願商標 :  이태리안경
(出願 76-6236)

引用商標 :

● 判決內容

原審決의 設시理由에 의하면 原審은 本願商標가 “눈의 圖形”과 “이태리 안경”이라는 文字가 結合되었거나 “눈의 圖形”은 識別力이 없고 “이태리”도 顯著한 地理的 名稱으로서 商標로서 特別顯著성이 없는 것이라고 設시한後 “눈의 圖形”이 識別力이 있다하더라도 “눈의 圖形”과 “이태리”라는 文字와는 稱號 및 觀念上으로 一聯 不可分性이 없으므로 結局 “이태리”라는 地理的

本願商標 :  P & H
(出願 76-1554)

引用商標 :

● 判決內容

原審決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本願商標는 알파벳의 “P”字와 “H”字를 “&”라는 記號로 連結 表示한 것으로서, 第37類 “動力起重機 및 掘鑿機(無限軌道車 및 其他 自動車에 裝置된)와 電氣브레이크”를 指定商品으로 삼고 있는바, 現行 商標審査基準에 따르면, 이는 單純히 알파벳의 “P”字와 “H”字를 “&”라는 記號로 連結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商標登錄의 要件인 特別顯著性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商標法 第8條 1項 6號에서 말하는 簡單하고 혼히 있는 標章에 지나지 아니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判斷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니 위와 같은 判斷은 正當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은 特別顯著性에 관한 法理를 誤解한 허물이나 그 밖에 다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區分 事件番號	判決(審決)日 (結果)	名 稱	適用法條文 (類型別)
79후 97	80. 3. 25 (棄 却)		商標法 第8條 第1項 第6號
78抗告(절) 786 (77-5401)	79. 11. 30 (不成立)	(10類) 殺蟲劑, 殺 菌劑, 除草劑	(簡單한 標章)

本願商標 :

(出願 77-5401)

引用商標 :

M 45
엠 사십오

● 判決內容

原審決理由에 依하면, 原審은 本願商標 “M45” 部分은 單純히 英文字 1字와 아라비아숫자 2字를 單純히 結合한 것이고, “엠사십오” 部分은 單純히 “M45”의 字音を 發音나는대로 國文字로 併記한데 不適當한 것으로서 簡單한 標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本願 指定商品과 關聯하여 볼 때, “M”은 製品의 記號 “45”는 그 規格番號 등으로 化學製品에 普通으로 使用되는 記號 또는 規格番號로 느껴지거나 誤認될 수 있는 簡單한 標章에 該當된다고 할 것이며, 結局 本願商標는 所論 甲 1, 2, 3號證의 各商標와는 달라 商標法 8條 1項 6號에 依하여 商標로서 登錄될 수 없는 것이라고 判斷하고 있는 바, 原審의 記錄에 살펴 보아도 正當하고 거기에 所論과 같이 判斷遺脫, 理由不備, 審理未盡 또는 商標法 3條에 違反된 違法이 없다.

著名商標

區分 事件番號	判決(審決)日 (結果)	名 稱	適用法條文 (類型別)
79후 82	8. 3. 25 (棄 却)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9, 10 號
78抗告(절) 381 (76-7151)	78. 3. 29 (不成立)	(第45類) 메리야스, 내의	(주지, 著名 商標와 出處 의 誤認混同)

本願商標 :

資 生 堂

出願 75-7151)

引用商標 :

世界的으로 알려진 日本의
(株) 시세이도 商標

“資生堂”

● 判決內容

原審決은 本願商標가 先登錄인 引用商標와 同一에 가까운 程度로 유사하며 同 引用商標는 우리나라에 登錄되기 前부터 우리나라의 需要者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日本國 商標로서 本願商標의 出願前 그 指定商品인 內衣와 同一 또는 類似商品인 婦人服 內衣에 附着하여 製造販賣하고 있는 事實을 단정하고 本願商標는 商標法 第9條 第1項 第9, 10號에 該當되어 登錄될 수 없다고 判定한 措置는 正當하다고 是認되어 審理未盡 理由不備, 法理誤解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계속>

發 刊 案 內

海外 特許情報

— 季 刊 —

本會는 年 4回 季刊으로 海外特許情報를 發刊하고 있습니다.

4·6倍版 200面내외로 發刊되는 이 刊行物에는 海外特許制度를 비롯하여 各種 特許情報가 실려 있습니다.

會員社에는 無料配布되고 있습니다. 많은 愛讀바랍니다. <編輯者 註>

낭비없는 알뜰피서
가족끼리 오손도손